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4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0347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구합6819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148,990원, 지방교육세 42,314,890원, 농어촌특별세 21,157,4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4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조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하여 민사법상 법리와 달리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고 있고, ②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됨으로써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 정의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의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의 부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4

산 소유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④ 이 사건 법률조항 제1의 나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의 '매각·증여'를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역시 실질적으로 보아 위탁자를 취득자로 보아야 하며, ⑤ 수탁자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 보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관계 종료 후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입주자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로 보는 유권해석에 반한다.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탁자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신탁업자가 수탁자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위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보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련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취지나 목적이 다른 법령에 관한 것이다.

③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4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규정으로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이를 근거로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인정할 수 없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 정의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의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탁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의 '매각·증여'의 해석 여하에 따라 '취득'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9942판결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⑥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에게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면서(제17조 제1항) 분양대금의 수납 역시 수탁자 명의 입금계좌로만 받도록 규정(특약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4

항 제24조 제5항)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는 수탁자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것에 해당되어 그 입주자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⑦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신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